

##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 □ 제정이유

- 의정정보화를 촉진하고 의정활동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의원들에게 보급하는 노트북컴퓨터와 이와관련된 주변장비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관리대상 물품은 충청북도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 의원에게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노트북 컴퓨터 및 이와관련된 주변장비와 프로그램에 한함.
- 의원이 노트북컴퓨터 반출을 요구할 경우 대장에 기록한후 반출
- 사용자가 임기만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와 관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
- 물품을 사무실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시에는 통신요금 및 물품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관리공무원 및 사용자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 사용자 및 관리공무원은 컴퓨터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록된 자료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 관리공무원이 사용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주요자료 수록 여부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확인받아야 함.
- 사용자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 관리공무원은 물품사용확인서를 사용자별로 정구하여 보관

##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충청북도의회의 물품을 인수하여 직접 사용하는 의원을 말한다.
2.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담당관실·전문위원실의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3. “사무실”이라 함은 충청북도의회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말한다.

**제3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사용자는 물품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을 보관·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의 반출 및 반납)** ①의원에게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노트북 컴퓨터 및 이와관련된 주변장비와 프로그램에 한한다.

②관리공무원은 사용자가 노트북 컴퓨터 반출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한 후 반출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도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와 관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물품을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통신요금 및 물품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컴퓨터 보안 관리)** ①관리공무원 및 사용자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충청북도 및 의회에 대하여 입력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도정(교육시책 포함)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에 한한다.  
③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1.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한 사항

④사용자 및 관리공무원이 컴퓨터를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록된 자료가 유출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무원은 사용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주요자료 수록여부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①사용자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물품관계법규에 의한다.

③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사용확인서를 사용자별로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보안업무 제규정 등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노트북PC장비반출대장

장비번호 :

### 사용자:

의원

[별지 제2호 서식]

## 물 품 사 용 확 인 서

○ 사용물품

구 분	물 품 1	물 품 2
물 품 명		
제 품 번 호		
형 식 (규격, 용량)		
수 량		
취 득 일 자		
취 득 가 격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의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

다 음

1. 위의 물품사용에 대하여 물품 및 보안관계 법규와 규정을 준수 하겠음
2. 임기만료, 의원직 상실, 관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신속하게 반납하겠음.
3. 위의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변상하겠음.

2000.

충청북도의회의원

(서명)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 근 거 법령

### □ 지방재정법

- 제97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기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118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당해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조례

###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도지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도본청 (생략)

2. 도의회사무처

물품관리관 - 총무담당관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사무관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실 주무담당사무관

3. 청소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도지사가 도의회사무처는 도의회사무처장이, 청·소는 청·소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2000. 9. 8 개정)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④ 생략

⑤ 물품관리관은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이하되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보안관련지침

### □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제37조(개인용컴퓨터 보안관리)** ① 개인용컴퓨터(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출력하거나 문서편집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용 노트북 운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외부로 반출시 저장내용에 대한 보안취약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개인소유의 컴퓨터(노트북 등)는 중요정보가 처리, 보관되는 각급 기관내부에 반출·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